환경부 – 2012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자, 가축분뇨 공공 및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대폭확대

환경부는 한미 FTA 체결 및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대비, 「가축분뇨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농림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자하여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 86개소를 신설하는 등으로 중규모 이하 농가(돼지 2,000두 이하) 가축분뇨의 60% 정도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소규모(신고이하)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시설(32개)을 조기에 완공하고, 공공처리시설 미설치지역에 16개의 시설을 새로이 추진하는 등으로 일일평균 8,400톤 이상을 처리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중규모(허가)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을 2011년까지 70개소를 설치하여 일일평균 7,000톤 이상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정화처리 위주의 공공처리시설을 지역특성을 고려한 퇴 · 액비 자원화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전환하고, 축산농가, 경종농가, 양돈협회, 농협 등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퇴 · 액비 유통센터"를 활성화하여 자원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액비 생산농가는 액비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였으나 가축분뇨 처리기술의 발달로 2~3개월 이내 완전히 부숙이 가능하므로 액비 처리방법별 시설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관리대책은 시장 · 군수의 역할과 의지가 중요하므로 환경부는 지자체별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 확인하여 공공처리시설 예산 반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 수질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시행

기존 수질관리를 수생태적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물환경 관리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했던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5월 17일 공포된데 이어, 동법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 1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시행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작년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을 수립하여 BOD 등 유기물질 중심의 수질관리 뿐 아니라 수생태계 복원과 수위해성 관리에 대한 정책적 비중을 대폭 높인 바 있으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인 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개정 법령의 가장 큰 특징은 법의 명칭과 목적에서부터 목표기준의 설정 · 평가 · 관리체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내용이 대폭 강화된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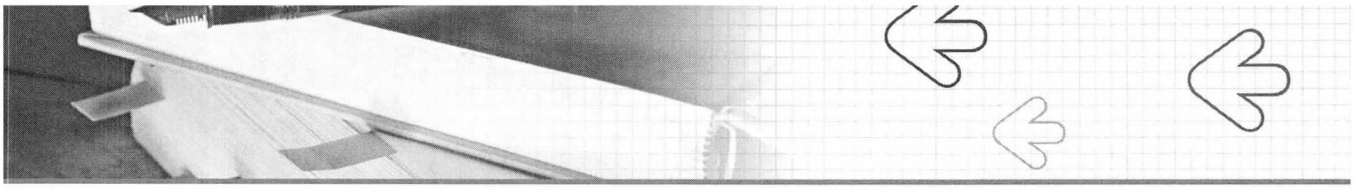

① 종전 목표수질을 수질 · 수생태계 목표기준으로 변경

○ 종전에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만을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수질 뿐 아니라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그 달성여부를 매년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

② 하천관리청 등에 대한 수질 ·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 환경부장관이 하천 · 호소 등의 수질 ·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천관리청 등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 ·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받은 조치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③ 수변구역을 수변생태구역 관리로 강화

○ 한강 · 낙동강 · 금강 · 영산강 등 4대강 수계 특별법에 따른 수변구역 이외에도 수질 ·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수변토지 등을 매수하여 수변습지 등 수변생태구역으로 조성 · 관리할 수 있게 함.

④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신설

○ 수질 · 수생태계 정책방향, 수계간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 농림부, 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민간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아울러, 오염된 하천 · 호소 등에 대한 수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필요시 공공수역에서 물놀이 등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위해성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① 수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수질 · 수생태계 목표기준 달성 여부 평가뿐 아니라 하천 · 호소 등의 수질오염으로 사람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② 공공수역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는 조치 강화

○ 오염된 하천 · 호소 등에서 수영 등 물놀이, 음용 · 취사행위, 어패류등 포획 · 섭취행위 등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

③ 수질오염경보의 확대

○ 기존의 조류경보 이외에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뮴 등)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수질오염경보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그 밖에 현재 시행중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측정기기 부착제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또한 개선된다.

①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 확대

○ 그 동안에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 섬진강 등 4대강 수계에서만 시행되던 수질오염총량제를 4대강 이외의 기타 수계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② 측정기기 부착대상 확대

○ 그 동안에는 민간 폐수배출시설만 측정기기 부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시설도 부착하도록 함.

③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대상 확대

○ 비점오염원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짐에 따라 도로 · 철도 등 5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광업 등 7개의 폐수배출시설을 새로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함.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우리나라의 수질환경관리가 선진국형 관리모델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령 개정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1 >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및 시기

□ 부착대상 기기 및 시설

	측정기기의 종류	부착대상
자동 측정 기기	수소이온농도(pH)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 총질소(T-N) 총인(T-P)	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 · 운영 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200㎥ 이상인 사업장과 영 별표 8에 따른 제1종 내지 제3종 사업장 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서 연간 1일평균 방류량이 700㎥ 이상인 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능력(시설용량)이 1일 2,000㎥ 이상인 시설
부대 시설	자동시료채취기 자료수집기(Data Logger)	

□ 부착시기

사업장 구분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	부착기한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 · 운영 사업장	2,000㎥/일 이상 사업장	2008년 9월 30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2종사업장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 · 운영 사업장	700㎥/일 이상 2,000㎥/일 미만인 사업장	2009년 9월 30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3종사업장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 · 운영 사업장	200㎥/일 이상 700㎥/일 미만인 사업장	2010년 9월 30일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100,000㎥/일 이상인 시설	2008년 5월 19일까지
	10,000㎥/일 이상 100,000㎥/일 미만인 시설	2008년 11월 19일까지
	2,000㎥/일 이상 10,000㎥/일 미만인 시설	2009년 11월 19일까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용량 10,000㎥/일 이상인 시설	2008년 5월 19일까지
	방류량 700㎥/일 이상 처리용량 10,000㎥/일 미만인 시설	2008년 11월 19일까지

※ 3종 사업장은 부착기한 이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9개월 이내 부착

환경부 – 「먹는샘물 품질인증제도」 추진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원수관리, 공장환경관리, 제조공정관리, 제품관리, 관련법규 준수정도, 유통관리 등 6개 분야 76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평가하여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먹는샘물 품질인증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품질인증은 (사)한국샘물협회에서 민간주도로 추진되며, 소비자단체, 원수관리, 공정관리, 지하수분야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동 협회 산하의 '먹는샘물품질평가위원회' 에서 심의 · 평가한다.

품질평가 지표는 현행 지도 · 점검 사항과 NSF(미, 식품위생기구)의 품질평가 사항 등을 토대로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품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와 품질향상을 유인할 수 있는 제요소를 발굴하여 선정하였다.

국내 먹는샘물은 그동안 동종 상품간 차별성이 없이 70개 제조업체가 품질의 평준화와 물량위주의 생산전략을 유지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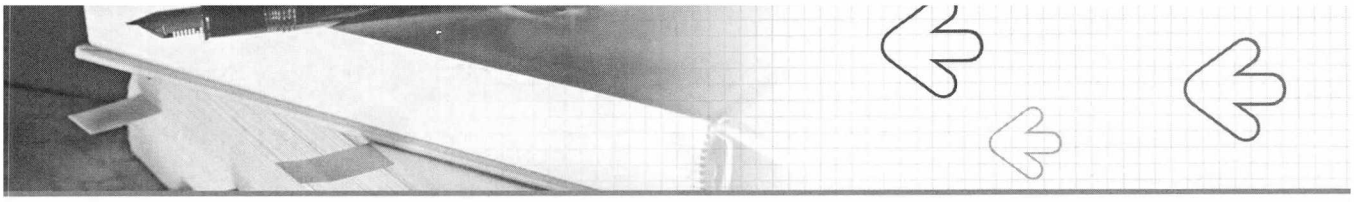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먹는샘물 품질향상과 브랜드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통하여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세계적인 제품을 육성하여 왔으며, 우리나라도 웰빙 등 고품질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고 경쟁력 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한 품질인증 평가는 업체간 품질경쟁 동기부여와 풍부한 미네랄 등 양질의 수질을 보유한 국내 먹는샘물이 소비자에게는 고품격의 제품을 제공함과 아울러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물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2007년 저녹스 버너 보급 시범사업 순조롭게 추진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저녹스 버너 보급 2차년도 시범사업이 초기년도의 어려움을 딛고 현재 202대의 계약 및 설치로 2007년 사업목표 133대를 152% 초과 달성하였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06년부터 수도권 대기질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재정적인 문제로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안산 · 시흥시 지역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비의 약 65%를 지원해주는 저녹스 버너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 중

저녹스 버너 지원사업은 시범사업 초기에는 사업자들의 인지도 부족으로 2006년 4월말까지 1대 보급되는 등 부진을 겪었으나 수도권청이 안내문 발송,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1:1 맞춤형 홍보 등을 실시한 결과 사업자들의 인지도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현재 보급되고 있는 저녹스 버너는 가스버너의 경우 질소산화물 저감능력이 53%에 달하는 등 저감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잠정적인 조사에 의하면 질소산화물 저감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면에서도 다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중소사업장의 저녹스 버너 설치 수요는 더욱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도권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저녹스 버너 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물질 저감여부, 인정기준 준수여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버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국고보조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2008년도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으로 2007년 사업비 36억원 보다 352% 증가한 127억원을 지원하여 수도권대기관리권역전역을 대상으로 463대의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간 '환경기술인' 홈페이지

www.keef.or.kr